■ 경찰수사규칙 [별지 제65호의8서식] <신설 2026. 6. 30.>

소 속 관 서

진행번호: 20XX보전XX호 0000. 00. 00.

수 신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 신: 소속관서

제 목: **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** 사법경찰관 ㊞

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을 요청합니다.

대 상 사 건	20XX-XXX호 000위반
요 청 사 유	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
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	
필요한 정보의 범위	**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**
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	**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**
보전요청 기간	조치일부터 XX일(60일 이내) /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
비 고	-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. -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이메일(****@****.***)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 1】

필요한 정보의 범위

1. 대상 계정

○ 1234@********.com, abcd@********.com

○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

2. 필요한 정보의 범위

○ 가입자 정보 : 사용자 이름, 생년월일, 계정생성일, 휴대전화번호, 복구용 이메일, 인증정보, 가입/탈퇴 일시 및 IP,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

○ 계정 보안 정보 : 2단계 인증정보, 복구 전화번호/이메일, 내 기기, 로그인 수단정보 등

○ 접속기록 : [UTC+9] 20XX. X. X. xx:xx부터 20XX. X. X. xx: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

○ 기기 정보 :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(IMEI),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, 통신사 정보, 쿠키값 등

【별지 2】

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

1. 범죄사실의 요지

피의자는 20XX. X. X. xx:xx[우리나라 표준시인 UTC+9 기준]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

2.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